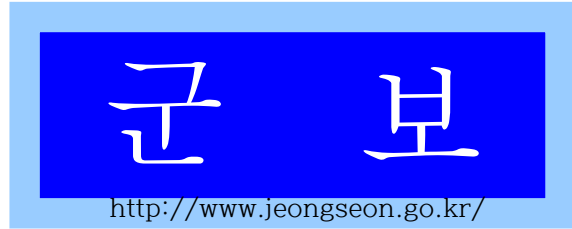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9호 2019. 9. 30.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28호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3
- 정선군 조례 제2729호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12
- 정선군 조례 제2730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 정선군 조례 제2731호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5
- 정선군 조례 제2732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30
- 정선군 조례 제2733호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36
- 정선군 조례 제2734호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55

○ 정선군 조례 제2735호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59
○ 정선군 조례 제2736호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 정선군 조례 제2737호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81
○ 정선군 조례 제2738호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 정선군 조례 제2739호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1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8호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조례」의 개정)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14조”로 한다.

제2조(「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으로서”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제4조(「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74조제6호”를 각각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조번	자치법규명	현행	개정안
1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아동복지법 제6조의</u> 규정에 따라 정선군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아동복지법</u> 」 제14조----- ----- -----.
2	정선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으로서 「 <u>지방자치법</u> 」 제12조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 <u>여성농어업인 육성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5. (생략)	제2조(정의) ----- -----. 1. “농업”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 <u>여성농어업인 육성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 <u>지방자치법</u> 」 제12조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5. (현행과 같음)

조번	자치법규명	현행	개정안
3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7. (생략) 8. “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선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금액 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바. 폐수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41조에 따른 배 출부과금 사. · 아. (생략) 9. ~ 17. (생략)	제2조(정의) ----- ----- --. 1. ~ 7. (현행과 같음) 8.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폐수배출부과금 지원 보조금: 「물환경보전 법」 제41조에 따른 배 출부과금 사. · 아. (현행과 같음) 9. ~ 17. (현행과 같음)
4	정 선 군 재난관리 기금 운 용 및 관 리 조례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 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 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②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임 차비용의 융자규모는 각 세대 별 대피 또는 퇴거에 소요 되 는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내 로 하고, 각 세대별 융자한도 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 자의 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생략)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 4조제8호----- ----- -----. ②영 제74조제8호----- ----- ----- ----- ----- ----- -----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11(생략)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 2. (생략)
-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

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④ 공동방지사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개정 2010. 2. 18.>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이하 "3시간 평균치"라 한다)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2017. 1. 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 1. 1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 6. 27.]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기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실장 최도현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 및 관련 법령 명칭이 변경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조례」
-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나.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9호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정선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정선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선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출향군민회”란 출향군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출향군민의 권리)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정선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향군민회의 책무) 출향군민회는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3.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정선군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관 또는 단체
3. 공무원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군 외의 거주자 또는 기관·단체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군의 실·과장 또는 산하기관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의견14-0016, 2014. 2. 24., 충청북도 보은군]

【질의요지】

보은군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려는바,

가. 이 조례안의 내용은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나. 이 조례안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출향인 간 및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목적, 주요 사업 및 적용 대상 등이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출향인 간 및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귀 청의 재정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조하여 본다면 조례 제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공통사항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보은군조례안”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보은군에 두고 있거나, 보은군 출신으로 보은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하며,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보은군수는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군과 향우회 간 문화·체육행사(제1호), 출향인과 고향방문 및 군과 향우회의 각종 교류·협력사업(제2호), 보은군의 주요 시책 홍보(제3호)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제6호) 등과 같은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보은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제1호),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경비(제2호) 등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군수는 출향인 간 또는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은군수가 보은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을 회원으로 한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은군조례안은 보은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는 관할구역 밖과 관련된 사무로서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보은군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사업은 군과 향우회 간 문화·체육행사,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군과 향우회의 각종 교류·협력사업, 보은군의 주요 시책 홍보 등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

으로써 보은군을 홍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은군수가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보은군조례안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어촌교류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제정되는 것으로 보려면, 보은군조례안의 제정 목적, 주요 사업 및 적용 대상 등이 도시농어촌교류법의 그 것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도시농어촌교류법을 살펴보면,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제정된 것(제1조)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제6조),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제14조),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제16조) 및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21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조례안은 공통사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주요 사업이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과 이에 대한 지원이고,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보은군의 출향인 및 향우회로서 도시농어촌교류법의 제정 목적, 주요 사업 그리고 적용 대상 등과 일치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보은군조례안은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보은군수의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출향인 간 및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은 질의 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직접적인 법률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2추176, 판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이 사안을 검토해 본다면, 보은군수의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출향인 간 및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보은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향인 간의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류·협력의 각 사업에 대한 보은군의 보조금 규모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은군의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보은군 내의 다른 주민 또는 민간단체와는 다르게 출향인을 위하여 조례로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무가 보은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출향인 간 및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귀 청의 재정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조하여 본다면 조례 제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안 6조)
 -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의 홍보
 -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최근까지 지원근거(조례)가 없어 지원예산 없음
- 도내 인근 8개 시군의 경우에도 10,000천원 이내로 편성

4. 작성자

행정과장 유 홍 열

☐ 제안이유

가. 정선군과 출향인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나. 군과 출향인 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 및 출향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향군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출향군민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정선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함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출향군민의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

다. 출향군민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출향군민회의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에 대한 내용 규정

라. 출향군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의 홍보
- 2) 전통시장, 축제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 3)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고향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에 포상 수여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0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 를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개정조례 부칙에서는 조례만 개정할 수 있으나 규칙을 개정하도록 한 불합리한 조항 삭제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없음.

4. 작성자

세 무 과 장 김 진 호

☐ 제안이유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조례 부칙에서는 조례만 개정할 수 있으나 규칙을 개정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 (안 부칙제2조제2항)

- ②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를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1호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관련조문

- 제7조(경비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비용수반 요인 없이 선언적·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전영기 의원 외 6명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대상 및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공동추진, 경비의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2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 ----- ----- -----.
1. <u>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u>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u>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3. <u>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거 나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판 단된 경우</u>	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u>
<u><신 설></u>	4. <u>영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u>
<u><신 설></u>	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관계법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5. 29.]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생략)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략)

⑥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⑦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 <개정 2018. 3. 13.>[전문개정 2017. 5. 29.]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기에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환경과장 전 광 덕

☐ 제안이유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79(2019.2.14.))에 따라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 위촉해제 사유 변경(안 제10조)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적용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3호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세부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할 경우 세부규정제8조에 따른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들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 (이하 “농작물 등” 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연도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0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 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

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소재지 관할지역 읍장·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읍장·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세부규정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손해사정인과 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하여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조(포획방지단등 운영)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획시설 대여 지원)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관계법령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 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덩, 창애, 울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 명세서
-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 명세서
-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 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해당 시·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포획시설 대여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보험 가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험의 운영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보험을 포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재원확보 등

제21조(재원확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군·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 조례안 제7조

나. 피해보상액 산정 : 조례안 제12조

다. 포획방지단 운영 : 조례안 제1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0년~2024년 (5년)

○ 추계방법 : 최근 3년간 (2017~2019년) 사업비 평균치로 비용추계를 산정 하였음.

나. 추계의 결과

○ 2020년~2024년까지 약4,255백만원 지출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총 비용		851	851	851	851	851	4,255
세출	국비	170	170	170	170	170	850
	도비	170	170	170	170	170	850
	군비	511	511	511	511	511	2,555

3. 관련 의견

○ 연도별 사업지원 규모에 따라 비용추계가 변경 될수 있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5년간 비용추계 사업비 : 4,255백만원

2. 사업비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평 균
총사업비	805	810	940	2,555	851
피해예방	400	142	104	646	215
피해보상	255	400	623	1,278	426
포획방지단운영	150	268	213	631	210

환경과장 전 광 덕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재원 조달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의존 재원	소 계(백만원, 40%)	340	340	340	340	340	1,700
	국비	170	170	170	170	170	850
	도비	170	170	170	170	170	850
자체 수입	소 계(백만원, 60%)	511	511	511	511	511	2,555
	지방세	511	511	511	511	511	2,555

2. 관련 의견

-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나, 포획
방지단운영은 자체 수입(군비)으로만 충당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환경과장 전 광 덕

□ 제안이유

- 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2019.3.21. 시행되어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함.
-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포획단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1) 피해예방시설 종류 및 대상(제외)자 기준 정의:(안 제3조, 제4조)
 - 2) 피해예방시설 요건:(안 제6조)
- 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1) 피해보상 대상(제외)자 및 기준 정의:(안 제9조)
 - 2) 피해보상액 산정 방법:(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3) 피해보상 조사 방법(손해사정인, 보험가입) 개선:(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라. 포획단 운영:(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4호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3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선군 33주민운동”이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1995년 3월 3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합의를 이끌어 낸 운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일)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3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일은 매년 3월 3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탁)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관련조문

- 제4조(기념식 및 행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비용수반 요인 없이 선언적·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배왕섭 의원 외 6명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안이유

- 폐광지역개발의 근간이 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합의한 1995년 3월 3일을 정선군 주민운동의 날로 공인화하여 주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확립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매년 3월 3일을 ‘주민운동의 날’로 기념일 지정
- 기념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기념일에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5호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영역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5가구 이상 마을단위 주민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공동체사업”이라 한다)을 주도하고 추진하는 마을주민·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해당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군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제5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체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③ 주민은 스스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체계
3.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다른 계획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민, 사업주체, 군 소재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주민의 복지증진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공동적 공동협력 활동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7.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8. 관련 미디어이용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공동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공동체사업의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

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체사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제9조(보고 및 사용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한 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했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5. 거짓보고를 한 때

제11조(평가 및 표창) ① 군수는 해마다 공동체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야 하며, 그 분석·평가의 전문성과 앞으로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

산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위원회)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공동체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3.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사업의 선정
 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 일정지역에서 주민 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사람
 2.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동체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간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

-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강원정선038			
정 책 명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정선군		
	부서명	경제과		
	담당자명	이병관	전화번호	033-560-23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과)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 결과,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성별 특성) 및 점검포인트 3-1(성별 균형 참여) 관련 아래와 같이 개선의견을 제출함.			
	1. (조례 제4조) 기본이념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지 향 명시 - 본 조례는 정선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 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과 관련한 것임. - 이에 따르면, 바람직한 마을공동체는 ‘자발적 참여, 주민 주 도’를 들 수 있음. 자발적 참여와 주민 주도성을 실현하기 위 하여서는 주민 누구라도 발언권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에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전통적인 가부장적 농촌사회에서 여성이나 이주민, 청 (소)년 등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음. 따라서 새로운 마을 공동체는 여성,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 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조례 제4조를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유함.			

2. (조례 제13조)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조례 제13조는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본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주요 기구임.
- 주요 기구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13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할 때” 여성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의 전 분야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당위적 요구이며 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조례 제13조제4항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유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4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u>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u>	
2	제13조(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u>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 ~ 5. (생략)	제13조(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u>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9년 8월 8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01일 정선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전희라/033-560-2316) 경제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9A강원정선038			
정 책 명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정선군		
	부서명	경제과		
	담당자명	이병관	전화번호	033-560-235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2(성별 특성) 제4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u>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u> 제5호를<신설>할 것을 권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4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u>5.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신설></u> 제4조(기본이념) 제5호 <신설>, 개선 의견에 대해 지향 / 수용 함.
2	*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3-1(성별 균형 참여) 제13조(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u>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 ~ 5. (생략) ⑤ (생략)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u>”를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며</u>”로 수정 개선할 것을 권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13조(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u>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제④항을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u>에서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u> 위촉하며로 권유한 개선 의견에 대해 지향 / 수용 함.
3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2019년 08월 05일

경제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공동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관련 조문 : 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2014년부터 시행하는 정선군 마을공동체 사업비에 소요되는 군비예산은 연간 평균 삼천만원 정도임(연평균 1억원 미만)

경제과장 전 증 표

□ 제안이유

가. 정선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운영으로 정선군 주민차지 실현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총칙을 규정 함 【제1조 내지 제5조】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 함 【제6조】

○ 군수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함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체계
-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민, 사업주체, 군 소재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

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을 규정 함 【제7조】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 주민의 복지증진,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공동적 공동협력 활동
-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등

○ 군수는 공동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라. 마을 공동체사업의 신청 내지 평가를 규정 함 【제8조 내지 제11조】

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운영사항 등을 명시함 【제12조, 제13조】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6호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 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호	30	50	100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 제2항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2	20	30	50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2호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50	100	200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82조제2항	30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 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발굴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및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없음.

4. 작성자

안 전 과 장 김 영 환

☐ 제안이유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므로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방법에 관한 조항 삭제(제7조제4항)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7호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
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국가, 강원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
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
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차인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
4.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5.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등의 교체사업
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
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
5.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제8조(준용)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대상가구 선정심사 기준 (제6조 관련)

영역	구분	평가기준	배점기준	비고
		합 계	100	
거주기간 (30)	정선군 거주기간 (30)	10년 이상	30	
		7년 이상 10년 미만	27	
		5년 이상 7년 미만	24	
		5년 미만	20	
건물노후도 (20)	건축년도 (20)	30년 이상	20	
		25년 이상 30년 미만	18	
		23년 이상 25년 미만	15	
		23년 미만	10	
주거형태 (10)	주거형태 (10)	자가	10	
		10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8	
		5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6	
		3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4	
가구원수 (10)	가구원수 (10)	4명 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경관개선 시급성 (30)	시급성 (30)	상	30	
		중	25	
		하	20	

[서식 1]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033) H·P	
가구원수		명	정선군 거주기간		년	
주거형태		☐ 자가 ☐ 임차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금액
합 계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동의(승낙)서

※ 작성되는 개인정보는 이 사업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관련 조문 : 안 제4조,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현황 12개소 160가구 적용

구분	자연취락 지구명	위치	주 택 수				비고
			계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12개소		160	31	14	115	
정선읍	계		62	13	7	42	
	북실리	북실리 696-4일원	26	9	4	13	
	봉양리	봉양리 4-2일원	12	0	0	12	
	덕송 제1	덕송리 573-1일원	13	3	3	7	
	덕송 제2	덕송1리 371일원	11	1	0	10	
고한읍	계		47	0	0	47	
	만항	고한리 산216-1일원	47			47	
북평면	계		33	14	7	12	
	북평 제1	북평리 269-15일원	5		2	3	
	장열 제2	장열리 189-1일원	9			9	
	장열 제3	장열리 209-1일원	8	3	5		
	숙암	숙암리 산329-1일원	11	11			
임계면	계		18	4	0	14	
	송계리 제1	송계리 506 일원	6	2		4	
	송계리 제2	송계리 536 일원	7	1		6	
	송계리 제3	송계리 264-3일원	5	1		4	

나. 추계 결과 : 160가구 × 3,000천원 = 480,000천원

3. 관련 의견

-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

전홍표 의원 외 6명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 방 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80,000	480,000
	지방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80,000	48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관련의견

-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보조금은 자체수입(군비)으로 충당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작 성 자

전홍표 의원 외 6명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 12. 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 4. 10.>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 · 공원 · 녹지 · 주차장 · 학교 · 마을회관 등의 설치 · 정비

다.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 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 개량

마. 주택의 신축 · 개량

☐ 제안이유

- 정선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하여 주거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제3조)
- 지원 및 대상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
 - 건물 준공 후 20년 경과한 단독주택
 -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범위 및 규모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
 - 주택 외부 보수 및 경관저해 시설물 철거 또는 개선
 - 가구당 필요 사업비의 50% 지원하되, 지원액은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물품구입, 기계 장비 교체사업, 조경사업 및 거짓 부정한 방법 지원제한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8호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선군 정착을 유도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업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귀농업·귀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귀농업·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수립할 경우에는”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으로 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 귀농업·귀촌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귀농업·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 및 운영”을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수행”으로,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귀농업·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업·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업무를 수행하는 귀농업·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업·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문, 정보 제공, 고충 처리 애로 사항의 해결
2. 귀농업인·귀촌인(이하 “귀농업인 등”이라 한다)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귀농업·귀촌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선 또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그 밖에 귀농업인 등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업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 거주시설 마련 사업
2.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
5.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
6. 귀농업·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업·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
7. 농지, 축사 등 매입 또는 임차
8. 귀농업·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귀농업·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귀농업·귀촌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3. 귀농업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신고일로부터 만 5년 이내까지로 하고 지원횟수는 1회 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귀농인·귀촌인”을 “귀농업인 등에 대한”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취소 및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등 지원받은 귀농업인 등이 법 제21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의 인구유입 촉진과 귀농인·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도시지역에서 군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선군 정착을 유도하고 정선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업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전입신고일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귀촌인”이란 군 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거주자가 군으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귀농·귀촌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귀농인·귀촌인은 군의 지원을 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

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귀농·귀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여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
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
농인·귀촌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정선군 귀농·
귀촌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
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절차
2.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
4.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
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
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
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
조에 따른 정선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귀농업·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귀
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
고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② -----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정선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

제6조(귀농업·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귀농업·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업·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업무를 수행하는 귀농업·귀촌종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업·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문, 정보 제공, 고충 처리 애로 사항의 해결
2. 귀농업인·귀촌인(이하 “귀농업인 등”이라 한다)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귀농업·귀촌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선 또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그 밖에 귀농업인 등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 수행-----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고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영 제8조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 거주시설 마련
2. 농업관련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자금과 농업안정 기금 융자. 다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은 제외한다.
3.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및 귀농인 실습
4. 귀농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5.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6.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제7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업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 거주시설 마련 사업
2.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
5.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
6. 귀농업·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업·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
7. 농지, 축사 등 매입 또는 임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귀촌인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귀농인 정착지원) ① 군수는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여 귀농을 권장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젊은 농업인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귀농인을 귀농인 정착지원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2년 이내에 귀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경영인
2.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농업인
3. 귀농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8. 귀농업·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귀농업·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귀농업·귀촌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3. 귀농업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신고일로부터 만 5년 이내까지로 하고 지원횟수는 1회 한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연차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실태 조사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귀농인 정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의 관리실태
2.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인 · 귀촌인 지원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11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을 지원받은 귀농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

<삭 제>

제10조(사후관리) ----- 귀농업인 등에 대한 -----

-----.

제11조(지원취소 및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 받은 귀농업인 등이 법 제21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군의
지역 외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
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5. 지원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귀
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귀농인
정착지원을 받은 귀농인에 대해
서도 제1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교부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고, 융자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그 취급기관에 서 면

<u>으로 알려야 한다.</u> <u>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u> <u>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u> <u>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u> <u>례」를 준용한다.</u>	<u><삭 제></u>
---	---------------------------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1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22.>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

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2. 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업인·어업인 교육, 상담·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원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

일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6. 1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 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 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 개정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관련 조문: 안 제6조, 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사업비	91	63	63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

☐ 제안이유

- 가. 귀농업인 정착지원 시 지원자격 및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귀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귀농업에 대한 내용(용어)을 변경하고 법령에 없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귀농업인·귀촌인의 정의 재정립(제 2조)
- 다. 귀농업·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제6조)
- 라. 귀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제7조)
- 마. 귀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신청(제8조)
 - 1) 귀농업인 지원자격 및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
 - 2) 귀농업인 지원대상의 확대 및 지원기간의 명확화

제256회 정선군의회(2019. 09.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39호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 위치: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제5조(사용 신청)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 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가공원료의 사용) ① 사용자는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7조(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정선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정선군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군수가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제7조 관련)

기종명	규격	구입 가격	잔존 가격	수리비계수	내구 연한	1일 사용료 징수 항목			1일 사용료 (A+B)÷C
						감가 상각비 (A)	수리비 (B)	예상사용일수 (C)	

□ 감가상각비: (구입가격-잔존가격)÷내구연수

□ 수리비: 구입가격 × 수리비계수(0.05)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시설 사용신청서

1. 신 청 인			
상 호 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 별 (해당란에 ○표)	남 여
연 락 처	일반 : 휴대폰 :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			
시 설 명	정선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 재 지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농업기술센터 내)		
3. 신청기간	20 . . . ~ 20 . . .		
4. 신청목적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5. 사 용 료	정선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	정선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담당직원 확인사항	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정선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가공시설 사용 승인서

승인번호	농산물가공센터 20 -		
1. 신 청 자			
상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2. 승인내용			
시 설 명	정선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 재 지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정선군농업기술센터 내)		
사용목적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사용기간	20 . . . ~ 20 . . .		
3. 특이사항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정 선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승 인 조 건

1.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시설 사용을 승인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하되, 관련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 중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식품위생법 및 정선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정선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③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정선군에 청구할 수 없다.
5.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시설사용을 재신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6. 가공시설 이용 후 부과되는 사용료를 정선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8.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 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

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

☐ 제안이유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능(제4조)

-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지도자 양성, 교육, 자문, 상담,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나. 사용 신청(제5조)

- 1)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의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다. 원료 사용(제6조)

- 1)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함.
- 2)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함.

라. 사용료(제7조)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함.